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 규정 (안 제4조 제2항 신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고,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진 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나. 재검진 시에도 서면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6조 제3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진대상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검진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법 제4조제7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진 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보훈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진대상자가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검진장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고 보

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훈병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재검진을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검진) (생략)	제4조(검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진대상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검진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법 제4조제7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진 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보훈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진대상자가 중증질환 등의

제6조(재검진) ①·② (생략) <u><신설></u>	<u>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검진 장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u> 제6조(재검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보훈병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재검진을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5130